창원시의회 공고 제2021 - 22호

신조 및 폐기 공인 등록 공고

창원시의회 공인 조례 제6조 신조 공인 및 제11조 폐기 공인 등록사항을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4. 05.

창 원 시 의 회 의 장

1. 신조 및 폐기 공인 등록 사유 : **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개정**

2. 최초 사용 및 폐기 일자 : **2021. 4. 5.**

3. 신조 및 폐기 공인 인영

신조공인		**폐기공인**	
공인명	인영	공인명	인영
창원시의회의원 **연구단체심의위원회** 위 원 장 인			